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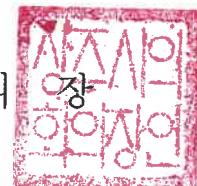


## 상주시의회 공고 제2023-29호

「상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8월 11일

상 주 시 의 회



### 「상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」 예고

#### 1. 제안이유

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함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제정 목적과 정의, 시장 등의 책무(안 제1조 ~ 제3조)
- 나.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(안 제4조)
- 다. 실태조사의 실시(안 제5조)
- 라.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(안 제6조)
- 마. 사업비의 지원, 협력체계의 구축(안 제7조, 제8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8월 17일까지 상주시의회 의장(참조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제·개정 (안)	수정 (안)	수정 사유

나. 성명(단체일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: lkj78@korea.kr

2) 주 소: (우37183)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

3) 팩 스: 054-535-9854 (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)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(전화: 054-537-7847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(<https://www.sangjucouncil.go.kr/> ⇒ 의정소식 ⇒ 입법예고)에 개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상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자치법규안 내용	의 견	비 고